

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농장규정

제정 1982. 3. 1
개정 1992. 7. 28
개정 1994. 11. 28
개정 2010. 2. 8
개정 2014. 4. 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3조에 규정된 순천대학교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농장(이하 "농장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0. 2. 8)

제2조(직무) 농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.

1. 학생의 실험·실습 재료 제공
2. 교수 및 대학원생의 시험·연구 활동 지원
3. 표본 재료의 확보 및 보존
4.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
5. 농장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

제3조(조직) ① 농장에는 농장장을 두고 농장장은 생명산업과학대학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1994. 11. 28, 2010. 2. 8)

② 농장에는 연구부와 관리과를 두며 연구부는 기초연구분과·작물분과·원예분과로 구분한다.

③ 각 연구부에는 분과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과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4. 04. 07)

④ 관리과에는 과장을 둘 수 있으며 직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4. 04. 07)

제4조(임무) ① 기초연구분과는 토양비료·작물보호 및 농기계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작물분과는 답작·전작·특용작물 및 양잠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③ 원예분과는 과수·채소·화훼 및 시설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관리과는 일반사무·회계 및 온실·포장관리와 기타 다른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(포장운영 및 이용) ① 농장은 학생의 실험·실습 및 교수 연구를 위한 실험포장과 경영포장으로 구분 운영한다.

② 농장에서 재배중인 작물 또는 생산물의 일부를 학생실습 및 교수연구 재료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실험·실습·연구 등의 목적으로 포장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는 농장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농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분야의 교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실험·실습 및 시험·연구 완료 후 생산물은 농장에 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장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농장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및 직원 중에서 농장장의 추천으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(개정 1994. 11. 28, 2010. 2. 8, 2014. 04. 07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실험포장 및 경영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
2. 작목 선정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

4. 기타 농장장이 부의한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(1982. 03. 01)

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2. 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4. 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